

2022학년도 충남삼성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2021. 8.

- 학교주소 : 우)31454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77
- 문의전화 : (041) 339-3145
- 팩스번호 : (041) 339-3009
- 누리집 : <https://www.cnsa.hs.kr>



목 차

I. 모집 개요	1
II. 지원 자격	2
III. 전형 일정	7
IV. 전형 방법	8
V. 전형별 제출 서류	13
VI. 정원 미달로 인한 결원 보충	15
VII. 유의 사항	15
<양식 1> 입학원서	16
<양식 2> 자기소개서	18
<양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9
<양식 4> 사회통합전형 학부모 확인서	21
<양식 5> 사회통합전형 학교장 추천서	22
<양식 6> 사회통합전형 학교장 확인서	23
<양식 7> 입학 포기원	24
<자료>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지침	25
<특례양식 1> 2022학년도 고등학교 특례 입학 신청서	24
<특례양식 2> 2022학년도 고등학교 특례 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24

2022학년도 충남삼성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I 모집 개요

1 입학 정원 : 남·여 360명 (12학급)

2 모집 지역 : 충청남도

3 모집 구분

모집 구분		모집 정원	비율	비고
정원 내	충남 미래인재 전형		36명	10%
	임직원자녀 전형	A	234명	70%
		B	18명	
	사회통합 전형		72명	20%
계		360명	100%	
정원 외	특례입학 전형		10명	3%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10명	3%

II 지원 자격

1 공통 지원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형 구분	지원 자격
공통 사항	1) 충청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3) 타 시·도의 특성화중학교,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졸업예정자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5)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

※ 2)~4)항의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원서 접수일 기준' 모든 가족이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자를 뜻함

2 충남 미래인재 전형 지원 자격

전형 구분	지원 자격
충남 미래인재	공통지원 자격을 갖춘 자

3 임직원자녀 전형 지원 자격

전형 구분	지원 자격
임직원자녀 A	1)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자(DS부문 온양/천안사업장), 코닝정밀소재에서 근무 중인 자의 자녀 2)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학교법인 충남삼성학원 및 산하 교육기관 교직원의 자녀
임직원자녀 B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서 '임직원자녀 전형 A'에 해당하지 않는 삼성 계열사 중 충남지역 사업장 에서 근무하는 자의 자녀

구분	대상자	지원 자격	
기 회 관 망 전 형	50%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우 선 선 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을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지원자
		학교장 추천자	생계가 극히 곤란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추천한 학생
사 회 다 양 성 전 형	소 득 8 분 위 이 하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도서·벽지 거주 학생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해당 지역 중학교에 1년 이상 재학한 도서·벽지 거주 학생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가정위탁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순직 군경, 순직 소방관,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등급 1급~3급) 장애인의 자녀
		농어가 자녀	농어촌의 읍면 거주자로 읍면 지역 중학교에 1년 이상 재학한 농어가 자녀
		장교·준사관·부사관 군인 자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장교·준사관·부사관 군인)의 자녀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의 자녀
		의사상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육보호)에 따른 등급 제1급~제6급 의사상자 또는 그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환경미화원)의 자녀
		우편집배원 자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우편집배원)의 자녀
		경찰관·소방관 자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경찰관·소방관)의 자녀
	소규모학교 졸업(예정)자	3학년이 1학급인 학교에서 두 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예정)자	

가.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18.7.)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은 건강보험료 활용이 불가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교육비지원 확인서'로 확인함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 확인서'로 확인**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심의 의결 후 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예시】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 그 주택이 경매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증빙서류 예시】

- 실직급여수급증서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나.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 지원 자격을 **소득 8분위(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로 가구원 수에 따른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으로 확인

2022학년도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금액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941,000	170,536	174,281	171,997
3인	6,374,000	220,987	238,835	224,800
4인	7,802,000	270,748	300,338	278,094
5인	9,212,000	321,769	356,168	337,302
6인	10,606,000	380,152	420,252	414,255
7인	11,996,000	414,255	456,308	449,388
8인	13,385,000	486,115	531,814	540,144
9인	14,775,000	540,144	583,151	634,303
10인	16,165,000	634,303	661,710	816,530

※ 기준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

※ 202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보건복지부)

다.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조부·조모,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
-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지원자가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 이혼 가정의 경우 학생을 부양(친권자)하는 부 또는 모의 납부실적만 반영함

【산정·적용 사례】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적용 사례
 - ①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 2천원 납부하는 4인 가구의 경우
: 3만원(부) + 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
 - ② 조모,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가정주부), 지원자, 남동생(중학생)인 경우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수 1인 ⇒ 아버지 건강보험료만 반영
 - ③ 조부,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교사), 지원자, 누나(대학생), 여동생(중학생)
: 가구원 수 5인, 수입 가구원수 2인 ⇒ 아버지, 어머니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 ④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미혼 직장인)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 수 2인 ⇒ 어머니와 형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 ⑤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기혼 직장인)
: 가구원 수 3인, 수입 가구원 수 1인 ⇒ 어머니 건강보험료만 반영 단, 형은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5

특례입학 전형 지원 자격

구분	대 상 자	비고
유형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유형 2-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기준일(7월 1일)이후 전학 또는 재취학·편입학한 학생
유형 2-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자녀	
유형 2-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유형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취학하여 졸업한 자	
유형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지침」 참조

6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지원 자격

구분	대 상 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Ⅲ 전형 일정

구 분		전형 일정	장 소
1단계	원서(인터넷) 접수	2021. 12. 09.(목), 10.(금), 13.(월)	본교 누리집 및 접수사이트
	원서(출력물) 제출	2021. 12. 09.(목), 10.(금), 13.(월)	본교 접수처
	1단계 합격자 발표	2021. 12. 16. (목)	본교 누리집
2단계	면접	2021. 12. 25. (토)	본교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01. 03. (월)	본교 누리집
합격자 소집		2022. 01. 05. (수)	본교
신입생 등록		2022. 01. 18. (화) ~ 19. (수)	
추가 모집	원서접수	2022. 01. 24. (월) ~ 2022. 01. 25. (화)	본교 접수처
	면접	2022. 01. 26. (수)	본교
	합격자 발표	2022. 01. 27. (목)	본교 누리집
	합격자 등록	2022. 02. 04. (금)	

- 원서접수(서류 제출)는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7:00까지 실시함
- 1단계 원서접수는 출력물이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한 후 반드시 원서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함. (자기소개서는 온라인 입력으로 마감함)
- 우편접수 서류는 제출 마감일 마감 시간까지 도착해야함.
- 입학 포기자는 입학 포기원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당해 학년도에는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IV 전형 방법

1 자기주도학습 전형

가. 단계별 전형 요소 및 배점

단계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	비고
1단계	내신 성적 환산 점수(250) + 출결(감점)	모집 인원의 2배수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250) + 면접(100)	모집 인원 선발

나. 동점자 처리

- 1) 1단계 합격선의 동점자는 전원 2단계 대상자로 선발
- 2) 2단계 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항목 순으로 선발
 - (1) 1단계 교과 성적 상위자
 - (2) 면접 점수 상위자
 - (3) 인성 영역 상위자
 - (4)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다. 최종합격자 사정

- 1) 임직원자녀 전형 A, B는 미충원 시 상호 교차 충원 가능
- 2)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 되더라도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없음
- 3)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의 50% 이상을 기회균등전형으로 우선 선발
- 4) 기회균등전형 지원자가 모집정원의 50%에 미달한 경우 미달 인원은 사회다양성전형 지원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음
- 5) 면접에 불참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6) 합격자 중 규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합격이 취소됨
- 7) 입학예정자로 입학을 포기한 자는 당해 학년도에는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가. 전형 요소 : 내신성적 환산 점수(250점) + 출결(감점)

나. 반영 과목 및 과목별 배점

과목	학기 반영 과목				평균 반영 과목							총 점	
	수학	과학	국어	영어	도덕	사회	역사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배점	50	37.5	37.5	37.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250

다. 성취도에 따른 점수 배점

성취도	A	B	C	D	E
환산점수	5	4.75	3.75	1.75	0.75

라. 교과 성적 산출 방법

(1) 학기 반영 과목

- ① 해당 과목 : 수학, 과학, 국어, 영어
- ② 반영 방법 : 학기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점수가 환산됨

반영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반영비율	20%	20%	30%	30%

(2) 평균 반영 과목

- ① 해당 과목 : 도덕, 사회, 역사,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 ② 반영 방법 : 해당 과목 성적이 존재하는 학기들의 성적 **평균값**을 반영함

(3) 성적이 일부 없는 경우의 성적 산출 방법

구분	산출 방법
2-1학기 또는 2-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2-2학기 과목 성적으로 2-1학기 과목 성적 대체 2-1학기 과목 성적으로 2-2학기 과목 성적 대체
3-1학기 또는 3-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3-2학기 과목 성적으로 3-1학기 과목 성적 대체 3-1학기 과목 성적으로 3-2학기 과목 성적 대체
2-1학기, 2-2학기 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	3학년 1학기, 2학기 성적으로 각각 대체
3-1학기, 3-2학기 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각각 대체
2학년, 3학년 중 1개 학기의 성적만 있는 경우	성적이 있는 1개 학기의 성적으로 모두 대체

※ 다음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경우, 자기주도학습 전형 대상자에서 제외됨

- 학기 반영 과목 중 특정 과목의 성적이 네 개 학기 모두 없는 경우
- 평균 반영 과목에 해당되는 모든 과목의 네 개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마. 출결 성적 산출 방법

미인정결석일수	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점수	0	-0.5	-1.0	-1.5	-2.0	-2.5	-3.0

- (1) 출결 점수는 중학교 재학 기간 중 미인정 결석 횟수를 합산하여 결석 일수에 해당되는 점수만큼 교과 성적에서 감점 처리
- (2)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는 그 횟수를 합산하여 3회를 미인정 결석 1일로 계산 (2회 이하는 버림)
- (3) 질병 및 기타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포함하지 않음
- (4) 동일한 학기 수업 일수가 중복되는 경우 이전 결석 일수는 제외

바. 중학교 졸업자 (과목별 성취등급이 없는 경우)

졸업자 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변환 성취도	A	B	C	D	E

사.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자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성적은 6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선택 과목)의 총점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

검정고시 점수	600	594이상 600미만	588이상 594미만	582이상 588미만	576이상 582미만	570이상 576미만	564이상 570미만	558이상 564미만	552이상 558미만	546이상 552미만	480이상 546미만	480미만
조정내신 점수	250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160	150	140

가. 전형 요소 : 1단계 성적(250) + 면접(100)

나. 전형 내용 및 평가 요소

구분	세부	전형 내용 및 평가 요소
자기주도학습 영역	자기주도학습 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 (교육과정에서 동아리 활동 및 진로체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학교 특성과 연계해 충남삼성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인성 영역	핵심인성요소	본인의 인성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입학전형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여 영역별로 평가

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1)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여 1,50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
- 2)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 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기재 시 0점 처리
- 3)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 TOEFL · TOEIC · TEPS · TESL · TOSEL · 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 교내 · 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 ·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0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00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00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출신 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라. 코로나-19(COVID-19) 방역수칙 단계별 면접 실시 여부 및 대체방안

- 1)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 시 면접 실시함.
-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 면접은 취소되며,
내신성적과 서류평가(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로 선발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대유행 / 외출 금지

마. 코로나-19(COVID-19) 대응 면접 계획

- 1) 사전 준비
 - 평가 당일 타 전형과 시험장을 중복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 안전관리 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 감염병 예방 교육, 환경 위생 관리(전문소독업체), 방역 물품 준비
 - 수험생 사전 관리(자기문진표 작성,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확인)
 - 응시자 유의사항 사전 고지
 - 시험장 및 시험실 관리
- 2) 시험 당일
 - 시험장 출입 관리(발열체크, 출입통제, 분산 출입 등)
 - 평가일 2~3일 전의 유사증상에 대한 사전신고
 - 상황 발생 시 대응 계획(응시 도중 유증상자 대처 등)
 - 시험장 관리(응시자 간격 확보, 창문 개방·환기, 이동 동선·간격 관리 등)
- 3) 사후 관리
 - 분산 퇴실(수험번호에 따른 퇴실 시간 배정 등)
 - 시험장 정문 근처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 관리
 - 평가 시행 후 전문업체 위탁 소독 실시
 - 평가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유증상 모니터링 등

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응시 계획

구분	응시 요건	제출 서류	제출기한
확진자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하다는 확인 필요	격리통지서 사본, 주치의 확인(의사소견서) 등	면접일 2일 전(D-2)까지
자가격리자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 필요	격리통지서 사본, 지자체 담당자 외출 허가 등	

- 1) 주치의 확인(의사 소견서 등) 및 관할 방역·보건 당국 협의 등을 거쳐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 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 실시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2) 자가격리자는 본교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시험장 이동 필요 시 사전 외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 차량 등으로 이동

V

전형별 제출 서류

1 공통서류

대 상	제출 서류
모든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양식1) 1부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 ※ 출력 옵션 중 '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 입시용' 탭을 선택하여 출력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자기소개서는 온라인 입력으로 마감 (서류 제출 없음)

※ 중학교 졸업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각 1부로 대체

※ 충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2 전형별 추가 서류

대 상	제출 서류	
충남 미래인재 전형	▶ 없음	
임직원자녀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원서접수 시작일 (2021.12.09.) 이후 발급된 것 ※ 재직기간이 표기되어야 함 ※ 직급 삭제 후 제출 (수정테이프로 삭제) ※ 임직원자녀 B는 근무지역이 표기되어야 함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1부 ▶ 학부모 확인서 1부 ▶ 지원 유형별 제출 서류
	사회다양성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1부 ▶ 학부모 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지원 유형별 제출 서류
특례입학 전형 (정원 외)	▶ 특례입학 유형별 제출 서류 <자료1 참조>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정원 외)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사회통합전형 지원유형별 제출서류

지원 유형		제출 서류	발급처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 학부모 확인서<양식 4> 	주민센터	
기 회 관 등 전 형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학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	▶ 교육비지원 확인서 1부		
학교장 추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추천서<양식 5> 1부 : 중학교 추천위원회를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 추천 - 객관적 증빙서류(예: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추천위원회 의견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 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에 등 사실을 명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사 회 다 양 성 전 형	공통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건강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다문화가족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국적취득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 1부(택1) 	해당 기관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도서·벽지 거주 학생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가정위탁 아동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부	
		순직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자녀	▶ 순직확인서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장애등급이 1급~3급 장애인 자녀)	▶ 부모의 장애인 증명서 1부	
		농어가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자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어가 자녀 : 어선원부 또는 맨손어업허가증 1부 	
		장교·준사관·부사관 군인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사항 또는 사망 사항 기재) 1부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부	
		의사상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확인서 1부	
		환경미화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우편집배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경찰관·소방관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소규모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장확인서 <양식6>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6개월<6월~11월> 평균 납부액)는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1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단, 증빙서류 자체에 별도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예외로 함)

Ⅵ 정원 미달로 인한 결원 보충

1.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원 합격 처리한다.
2. 미달인원에 한하여 추가모집을 실시하며,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3. 합격자의 미등록 또는 입학 전 타시·도 전출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으며, 입학 후 전입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다.

Ⅶ 유의 사항

1. 본교에 지원자는 희망에 따라 교육감 전형에 동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감 전형에 고등학교 동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불합격자는 미달 학교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2. 중학교 3학년의 전·편입(재취)학은 『2021.11.12.(금)』까지 허용한다.
3. 고등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4. 고등학교 자퇴생과 퇴학생은 내신성적산출기준일 이전 학적반영이 완료되어야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5. **이중지원은 출신 중학교장 책임하에 금지한다.**
 - 가. 전기학교 불합격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나. 먼저 시행한 전형에서 합격된 자는 이후 전형에 절대 지원할 수 없다.
 - 다. 전·후기학교에 합격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 라. 이중지원 사례
 - 1)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2)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3)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가 학교장전형 고등학교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 마. 이중지원의 예외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각종학교 등의 지원은 이중지원의 예외로 한다.
6. **면접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7. **입학 포기자는 <양식 7> 입학 포기원을 예비소집일 이후 학교로 제출해야 하며, 당해 학년도에는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8. 전형자료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9.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0. 면접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고입정보포털사이트(<http://www.hischoo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실시
11.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의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적용한다.
12.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교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입학홍보부(☎041-339-3145)로 문의한다.

2021. 8.

충 남 삼 성 고 등 학 교 장

입학원서 작성요령

- 1) ※ 표가 있는 난은 기재하지 않는다.
- 2)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담임교사 성적확인과 학교장 직인 날인하여 제출한다.
- 3) 지원자의 학력란은 해당부분 [졸업예정·졸업·검정고시 합격]에 ○표한다.
- 4) 출결은 중학교 1~3학년까지이며, 출결은 미인정으로 결석·결과·지각·조퇴한 횟수만 기재한다.
- 5) 교과 성적란은 과목별 성취도 수준(A~E)로 작성한다.
- 6)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사진을 활용한다.
- 7) 전형료와 수수료는 접수 시 납부한다.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1부
- ② 학교생활 기록부 1부
-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④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⑥ 지원자격별 증빙서류

주요전형일정

인터넷 원서접수	2021.12.09.(목), 10.(금), 13.(월)
구비서류 제출	2021.12.09.(목), 10.(금), 13.(월)
면접대상자 발표	2021.12.16.(목)
면접전형	2021.12.25.(토)
최종 합격자 발표	2022.01.03.(월)
합격자 소집	2022.01.05.(수)
합격자 등록	2022.01.18.(화) ~ 19.(수)

○ ○	
수험표	
수험번호	
성 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사 진 (3.5cm×4.5cm) 최근 3개월 이내</p> </div>	
충남삼성고등학교장	

입학원서 접수증	
접수번호	※
성 명	
<p>2022학년도 충남삼성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를 위와 같이 접수합니다.</p> <p style="font-size: 1.2em;">2021년 월 일</p> <p style="font-size: 1.2em;">충남삼성고등학교장</p>	

충남삼성고등학교

2022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자기소개서

* 수험번호

* 접수번호

지원자 기재 사항

성명 _____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_____ -

연락처 전화번호: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전형구분 충남미래인재 / 사회통합 / 임직원(A:,B:) / 국가유공 / 특례입학

2021년 월 일

지원자 : _____ (인/서명)

충남삼성고등학교장 귀하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기주도학습 과정, 건학이념과 연계한 지원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진로계획, 인성영역활동 실적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을 기술하십시오.
※ 자기소개서의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2. 본문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우회적·간접적 기재 포함) 등은 기재 시 0점 처리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은 기재 시 항목 배점의 10%이상 감점 처리되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3. 반드시 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제시된 문항별로 지정된 분량 내에서 작성하십시오.
4.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될 것입니다.

□ 나의 꿈과 끼, 인성

○ 본인이 충남삼성고의 건학이념과 연계해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200자 이내 - 띄어쓰기 제외)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 본인이 충남삼성고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및 충남삼성고를 졸업 후 진로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300자 이내 - 띄어쓰기 제외)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 본인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해 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700자 이내 - 띄어쓰기 제외)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third question.

○ 본인의 인성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300자 이내 - 띄어쓰기 제외)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fourth question.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98조와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항목)

입학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출결사항·교과성적 등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원서접수, 지원 자격·지원 결격사유 확인, 지원자 본인 확인, 성적산출, 합격자 명부 관리, 합격증명서 발급, 성적 통지, 통계자료 산출 등 입학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원 자격·지원 결격사유 조회와 교과성적 확인 등을 위하여 지원자가 졸업한 중학교 등 관련된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입학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입학관리 업무 완료 후 본인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삭제됩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결격 사유 조회 등 입학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본 입학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보호자 : (서명)

충남삼성고등학교장 귀하

2022학년도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 교 장 추 천 서

신청번호 2021 -

이름		주민등록번호	-
출신학교	() 중학교 ()년 ()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유형	기회균등전형(학교장이 추천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증빙서류			
추천사유			
2021 년 월 일			
추천자: () 중학교장[직인]			
충남삼성고등학교장 귀하			

※ 신청번호: 중학교별로 신청서를 접수한 연번호 기록

※ 중학교에서는 생계가 지극히 곤란하여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로 추천하려면, 추천위원회(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여야 하며, 지원 고교에 '학부모·학교장 확인서', '학교장 추천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2022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지침

I 목적

1. 고등학교 특례입학전형 대상자의 기준과 제출서류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고등학교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고자 함

II 관련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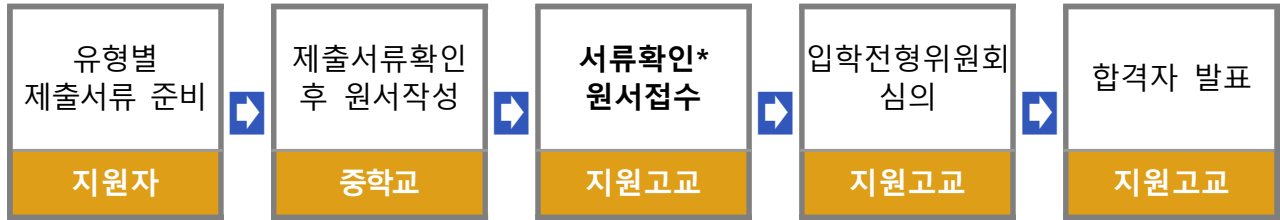
1.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교육부고시 제2019-214호, 2020.1.1.]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82조(입학전형 방법), 제92조(준용),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특례 입학 전형	외국에서 장기간 수학한 학생 또는 외국인 등이 국내 중학교 성적이 없거나 교육과정의 부적응, 문화적 차이 등으로 겪게 되는 고등학교 진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학생과 구분하여 실시하는 전형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거주기간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또는 재학,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체류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 또는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 일수를 제외한 기간
재학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영사 확인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이 해당 학적서류가 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IV 업무처리 절차

1. 학교장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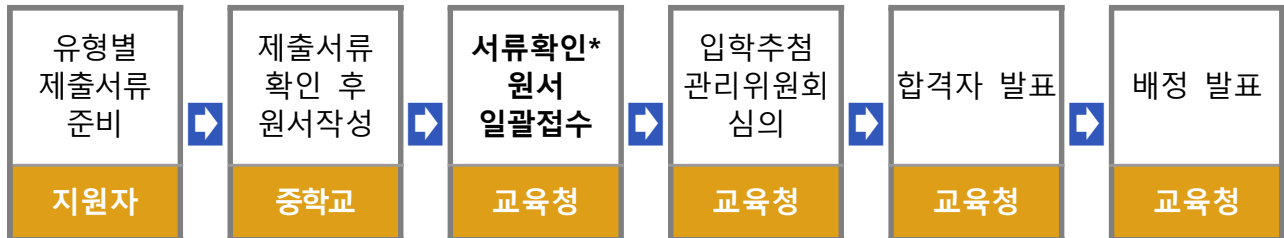
☞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 특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정확히 확인

2. 교육감전형

☞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정한 인원수(비율)를 교육감전형 배정원칙에 따라 우선배정



* 특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정확히 확인

** 교육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학교) 목록 안내' 참조

특례입학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아래의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정원 외 (모집정원 3%)로 입학전형을 실시함**

구분	대 상 자	비고
유형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유형 2-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기준일(7월 1일)이후 전학 또는 재취학·편입학한 학생
유형 2-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자녀	
유형 2-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유형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취학하여 졸업한 자	
유형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VI 유형별 세부 내용

유형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 적용사항

-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 국내 중학교 입학, 취학, 재취학, 편입학은 제외(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국내 중학교 입학, 취학, 재취학, 편입학은 제외(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양식1】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양식2】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사실, 성적증명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 학년, 재학 기간 명시 -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탭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와 확인서 제출 - 홈페이지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출입국사실증명(학생)	
	주민등록등본	○ 모든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 귀국일자 이후 발행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양식1】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양식2】
	주민등록등본	○ 통일부, 해당 행정 시·군·구청, 동주민센터 발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학력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교육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 참조

▶ 적용사항

☑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기준일(7월 1일)이후 전학 또는 재취학·편입학한 자**

☞ **외국학교에 2년 이상 재학**

- 재학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3년의 기간이 필요(초등학교 1~3학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
- 재학기간이 외국 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족한 경우(2개월 이내)는 고등학교 특례 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국내 중학교에 신입학한 자는 제외(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1학기 이상)의 일부를 이수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부모의 거주는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동일국 거주)
- 부모의 체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부모 모두 각각 거주기간 내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만 합산하여 인정)

구 분	거주 기간	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재학기간 동시 적용

▶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양식1】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양식2】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사실, 성적증명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 학년, 재학 기간 명시 -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탭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와 확인서 제출 - 홈페이지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증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해당자에 한함
출입국 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모두 제출
주민등록등본	○ 모든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둘 중 한명이라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부·모·학생 모두 제출 ※ 재외국민 미등록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문서***로 정밀하게 심사 후 대체 가능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국제 정세 등으로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한부모가족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한부모 가족에 한함

** [교육부 홈페이지]-교육정책공표: '초·중·고교육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 참조

*** '여권에 날인된 한국과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계약서,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 적용사항

-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기준일(7월 1일)이후 전학 또는 재취학·편입학한 자**
 - 외국학교 재학 기간, 외국 거주(체류) 기간 연한 미적용
 - 국내 중학교에 신입학한 자는 제외(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1학기 이상)의 일부를 이수
 - 외국 정부의 초청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교수요원의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 【양식1】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 【양식2】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사실, 성적증명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 학년, 재학 기간 명시 -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탐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와 확인서 제출 - 홈페이지 미 탐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해당자에 한함
출입국사실 증명서	○ 부·모·학생 모두 제출
주민등록등본	○ 모든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둘 중 한명이라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 증빙자료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교육정책공표: '초·중·고교육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 참조

▶ 적용사항

- 외국인 학생으로 **1학년 기준일(7월 1일)이후 전학 또는 재취학·편입학한 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국적(국가지역) 확인
 - 학생 성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등록증)에 명시된 성명을 기재하거나, 번역공증을 받은 경우 번역된 성명 기재
 - 국내 중학교에 신입학한 자는 제외(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1학기 이상)의 일부를 이수
 - 이중(복수) 국적을 가진 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리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부모의 국적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국내에 없는 경우 부모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번역 공증 제출)

▶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 【양식1】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 【양식2】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사실, 성적증명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 학년, 재학 기간 명시 -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탭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 서류와 확인서 제출 - 홈페이지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외국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출입국사실 증명서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국내거소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한국계 외국인)만 발급, 가족사항이 표기된 증명서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모든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모와 학생 모두 제출 ○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학생만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교육정책공표: '초·중·고교육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 참조

▶ 적용사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취학한 자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해야 함

▶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 【양식1】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 【양식2】
학력확인서	○ 통일부, 해당 행정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 모든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 부모가 둘 중 한명이라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적용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충청남도교육청 학력심의회에서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양식1】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양식2】
학력인정증명서	○ 충청남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발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 모든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 부모가 둘 중 한명이라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VII 기타 업무처리 방법

1.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함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함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 학년 과정
 - 중 학교 과정: 외국의 7~9 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 학년 과정

【 외국의 학제 】

국가명	학 제												총수학 기 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년
대한민국	1	2	3	4	5	6	1	2	3	1	2	3	12년
북 한	인민1	인민2	인민3	인민4	고등중1	고등중2	고등중3	고등중4	고등중5	고등중6			10년
미 국	1	2	3	4	5	6	7	8	고1 9	고2 10	고3 11	고4 12	12년
필 리 핀	1	2	3	4	5	6	7	고1	고2	고3	고4		11년
말레이시아	1	2	3	4	5	6	초급1	초급2	초급3	상급1	상급2		11년
브 라 질	1	2	3	4	5	6	7	8	9	10	11		11년
러 시 아	1	2	3	4	5	6	7	8	9	10	11		11년
뉴질랜드	1	2	3	4	5	6	F1	F2	F3	F4	F5	F6.7	13년
호 주	1	2	3	4	5	6	중1	중2	중3	중4	고1	고2	12년

2. 외국학교 인정범위: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3. 본 안내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충남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또는 「충남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적용한다.

2. 외국의 공문서 국내 사용 방법

□ 관련 규정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 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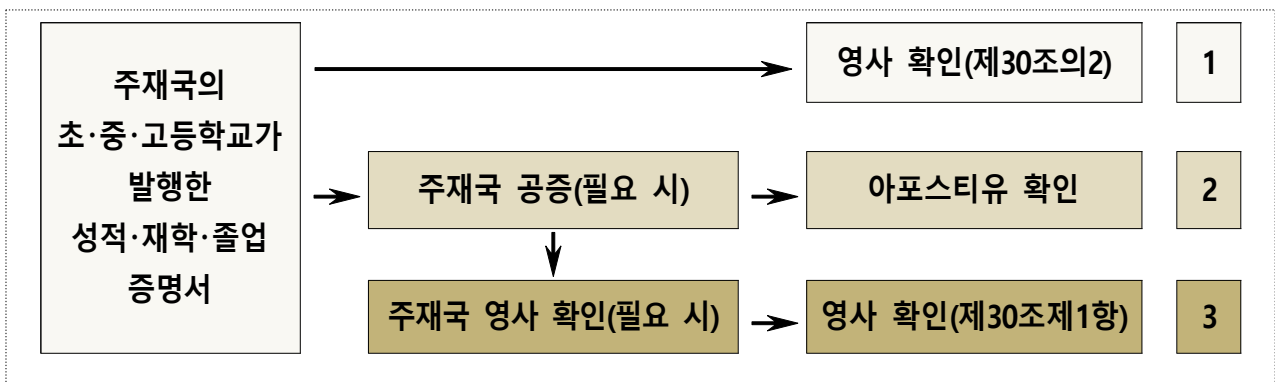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도장을 찍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4 제2호에 따른 확인도장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4 제3호에 따른 확인도장
-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 법령 주요 내용

- 외국의 학적서류는 해당 외국 주재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을 할 수 있음(영사 확인)
- 다만,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이면 영사 확인 대신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외국 공문서 국내 사용법

- 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는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 학적서류 국내 사용을 위한 3가지 방법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20. 6. 23. 기준)

지역	국가명	비고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피지, 팔라우, 필리핀, 한국	19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52개국
북미	미국	1개국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 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30개국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11개국
중동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튀니지	5개국
계		118개국

※ 협약가입국 갱신 현황 확인 사이트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 영사서비스/비자 -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붙임1】 유형별 제출서류

해당자별 제출서류	특례 입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을 준용)						비고
	유형1	유형 2-가	유형 2-나	유형2-다	유형3	유형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 이수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 (부모와 함께)	정부초청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학생	학력 인정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	○	○	○	○	○	○【양식1】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	○	○	○	○	○	○【양식2】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	○	○			○ 재학 학년, 재학 기간 명시 ○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탑재)에 한해 학교장 발급서류, 확인서 제출 ○ 홈페이지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 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				○ 해당 학교
출입국사실증명	○ (학생)	○ (부, 모, 학생)	○ (부, 모, 학생)	○ (학생)			○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	(○)	○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외국정부증명서 등) ○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 국적동포(한국계 외국인)만 발급, 가족사항이 표기된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	○	○	(○)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인	○	○	○ 모든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부, 모, 학생)					○ 외국 체류기간 명시 ○ 재외공관장, 외교부 영사 서비스과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주무부처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체류국 해외공관

해당자별 제출서류	특례 입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을 준용)						비고
	유형1	유형 2-가	유형 2-나	유형2-다	유형3	유형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 이수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 (부모와 함께)	정부초청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학생	학력 인정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				○ (부, 모, 학생)			-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모, 학생 모두 제출 -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학생만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	(○)	시·군·구청
학력확인서	(○)				○	(○)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	(○)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
학력인정증명서						○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3국 수학인정서 : 국제 정세, 내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 해외공관에서 발행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양식1】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2022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지원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학교	()중학교 제 학년 반 번				
보호자	이름		관계		집전화	
					휴대폰	
지원유형 (해당자에 √)		<input type="checkbox"/> 유형1 <input type="checkbox"/> 유형2-가 <input type="checkbox"/> 유형2-나 <input type="checkbox"/> 유형2-다 <input type="checkbox"/> 유형3 <input type="checkbox"/> 유형4				
지원자 학력	국내 학력	년 월 일 중학교 ()학년으로 (취학·재취학·편입학)			1학년 기준일(7월 1일) 이후 재취학(편입학)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외국 학력	국가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외국 재학학년 (반드시 현지 학년으로 표시)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유형 2-가 해당자만 작성						
국외체류 거주기간	구분	출국일자	입국일자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본인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부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모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본인은 2022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						
					지원자	(서명)
					보호자	(서명)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중학교장 [직인]						
충남삼성고등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고등학교 특례입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서명)

o 거주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거주기간을 기재하고 실체류기간은 거주기간 내에 거주국에 실제 체류한 기간을 기입

[양식2]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2022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지원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학교	()중학교 제 학년 반 번			담임교사 연락처	
	특례 유형	유형 ()				

해당자별 제출서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을 준용						제출서류 확인 체크 표시 (√)
	유형 1	유형 2-가	유형 2-나	유형 2-다	유형3	유형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 이수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 (부모와 함께)	정부초청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학생	학력 인정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	○	○	○	○	○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	○	○	○	○	○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	○	○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	(○)				
출입국사실증명	○ (학생)	○ (부, 모, 학생)	○ (부, 모, 학생)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	○			
주민등록등본	○	○	○	(○)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인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 (부, 모, 학생)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제3국 수학인정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				○ (부, 모, 학생)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	(○)	
학력확인서	(○)				○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	(○)	
학력인정증명서						○	
고등학교 우선배정 신청서 (교육감전형만 해당)	(○)	(○)	(○)	(○)	(○)	(○)	

* 제출서류 중 (○)는 해당자만 제출함

담임 : _____ (서명)